

서울고등법원 2022. 4. 21 선고 2021나204503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

담당변호사 김유신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영

변 론 종 결 2022. 3. 31.

판 결 선 고 2022. 4. 21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가합544667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[별지1] 보험계약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및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[별지1] 보험계약 목록 제2, 3, 4항 기재 각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. 피고 B은

원고에게 379,108,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6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)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재판장 판사 남성민, 판사 백숙종, 판사 유동균

[별지1]¹⁾

보험계약 목록

1. 보험종목 : H

증권번호 : I

보험계약자 / 피보험자 : 피고 B

보험기간 : 2005. 10. 7. ~ 2053. 10. 7.

2. 보험종목 : J

증권번호 : K

보험계약자 : 피고 C

피보험자 : 피고 B

보험기간 : 2016. 8. 30. ~ 2053. 8. 30.

3. 보험종목 : L

증권번호 : M

보험계약자 : 피고 C

피보험자 : 피고 B

보험기간 : 2016. 10. 21. ~ 2073. 10. 21.

4. 보험종목 : N

증권번호 : O

보험계약자 : 피고 C

피보험자 : 피고 B

보험기간 : 2019. 5. 2. ~ 2034. 5. 2. 끝.

1) [별지2]는 이 판결 이유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.

